

보도참고자료



2020년 5월 25일(월) 배포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5월 25일(월) 10:00부터 보도 가능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담당과장: 이유태(044-200-4484) 담당: 정신기 서기관(044-200-4493)

'<u>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심사하는데</u> 필요한 지침 마련한다'

-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 기준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건 처리의 엄밀성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 지침을 마련키로 하고 민관 합동 특별팀 (Task Force, 이하 TF)을 구축했다.
- 제1차(킥오프) 회의(5월 22일 16:00~17:30,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TF 운영 방안을 정하고, 플랫폼 분야의 시장 획정, 시장 지배력, 경쟁 제한성 판단 기준 등 향후 논의할 과제를 선정했다.
- 공정위는 올해 TF운영 뿐 아니라 관련 심포지엄 개최, 연구 용역 등도 함께 추진한 후, 이를 토대로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 심사 지침이 마련되면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 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정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추진 배경

- □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집행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8년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었고(113.7조 원), 2019년 134.5조 원으로 증가(18.3%↑)함.

- 온라인 플랫폼은 양면 시장(Two-Sided Market)*을 특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면 시장(One-Sided Market)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현 시지** 남용・불공정 심사 지침을 적용해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 * 양면 시장: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성격이 다른 두 부류 고객 그룹(예. 음식점과 주문자)을 연결시켜서 거래가 성사되도록 해주는 시장
 - * (예) 현 '시지 남용 심사 기준'은 **시장 획정의 기준**으로 **가격의 인상에 따라** 구매자가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양면 시장의 한쪽인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 기준으로는 시장 획정이 어려움.
-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 우대(Self-Preferencing), 멀티 호밍(Multi-Homing) 차단, 최혜국 대우(Most Favoured Nation) 요구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 전략을 구사**하면서, 현 심사 지침으로는 플랫폼의 행위를 제대로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 자사 우대: 플랫폼 사업자가 상·하방 시장에서 동시에 사업을 영위(Dual Role)하면서, 자사 서비스를 경쟁 사업자의 서비스보다 우대하는 행위
 - 멀티 호밍 차단: 자신의 고객이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하는 것을 막는 행위
 - 최혜국 대우 요구: 다른 판매 경로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최소한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건 처리 신속성** · **엄밀성**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 지침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o 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 기준** 마련 TF'를 구성하여 연말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2 TF 구성·운영 계획 및 논의 과제

- □ (구성) TF는 고려대 이황교수와 공정위 사무처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총 6명의 외부 위원과 공정위 소관 국·과장이 참여한다.
 - o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로부터 각각 경쟁법, 경제학 전문가를 추천받았고, 법조 실무자(변호사)와 KDI 연구위원을 포함했다.
- □ (운영 계획) 향후 7개월간(2020년 5월~11월) 매월 회의를 개최하여 선정된 논의 과제를 토의할 계획이다.
 - 또한, 6월과 11월에는 한국경쟁법학회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이며, 관련 **연구 용역**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 (논의 과제) TF 논의 과제로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 획정 방법, 시장 지배력 및 경쟁 제한성 판단 기준, 자사 우대·멀티 호밍 차단·최혜국 대우 요구 등 새로운 행위 유형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 등을 선정했다.

< 외부 위원 구성 >

	성명	현 직
1	이 황 (민간 공동 위원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경쟁법학회장
2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 교수
3	서 정	법무법인 한누리 공동 대표변호사
4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	양용현	KDI 시장정책연구부장
6	한종희	연세대 경제학 교수

3 │계획·기대 효과

- □ 공정위는 올해 TF운영, 심포지엄 개최, 연구 용역 등 심사 지침 마련을 위한 사전준비를 다각도로 추진한 후, 이를 토대로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 관련 첫번째 심포지엄을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6월 19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 심사 지침이 마련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건 처리 **신속성과 엄밀성**이 높아지고, 법 집행의 **시장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 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